

고객확인제도 (CDD/EDD)

고객확인제도란? (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과 실제당사자 여부에 대해 고객확인 및 검증을 하고, 거래관계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 의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객확인 대상

계좌의 신규 개설	<p>고객이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펀드 등의 신규 가입 •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 기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금액기준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p>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 <p>※ 기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송금: 원화1백만원 (외화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 그 외: 원화1천만원 (외화 1만불) 이상

고객확인 내용

금융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 분	개인고객 (외국인 포함)	법인 단체 고객
신원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 실명번호 •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또는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 소재지 (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법인 • 단체) •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규약, 규칙, 회칙 등) ※ 최대주주 등이 또 다른 법인인 경우, 최종 자연인(개인)이 확인될 때까지 또 다른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	---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i)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고(1 단계), ii) (i)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출자자, 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확인해야 하며, iii) 전항(i, ii)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는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 시 조치 등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제 4 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고객정보 재확인 절차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행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정보 재확인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의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